



[시행 2021. 4. 28] [외교부령 제93호, 2021. 4. 27, 제정]

[시행 2021. 4. 28] [법무부령 제1007호, 2021. 4. 27, 제정]

외교부 (영사서비스과) 02-2100-7673

법무부 (법무과) 02-2110-3169

- 1 ( ) 이 규칙은 「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 ( ) 「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 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.
  1.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(이하 “대상문서”라 한다)
  2. 신청인의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
- 3 ( ) 영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,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- 4 ( ) ① 신청인은 대상문서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(이하 “전자민원창구”라 한다)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신청인은 외교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 및 대상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,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.
- 5 ( ) ①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문서의 발행기관, 공증인 또는 「공증인법」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(印影: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)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.
  - ②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「공증인법」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명 및 직인의 인영을 관리할 수 있다.
- 6 ( )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건당 1천원으로 한다.

<제1007호, 2021. 4. 27.>

- 1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2 (다른 법령의 폐지) 「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」 및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」을 각각 폐지한다.

**3** 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」 및 「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사용 중인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서식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